

21. 開放時代의 建設產業 發展方案 摸索을 위한 討論會

主 催 : 國土開發研究院

지난 3월 29일 교통회관에서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개방시대의 건설산업 발전방
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제1분과〉

개방에 대비한 건설산업 제도개편 방향

발표자 : 李裁雨(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UR/정부조달협상 타결이후 건설제도개편

- 민간공사의 경우 94년부터 시장조사성격의 외국업체의 진출이 예상되고 97년이후는 약 2조원 이상의 공공공사조달에서 외국업체와 경쟁이 예상된다.
- 개방으로 건설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국내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비가시적인 효과도 기대됨.
- (종합적 제도개편 필요) 개방의 득실은 산업경쟁력 강화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및 철폐 등 종합적인 제도개편이 필요

□ 건설업 면허제도의 개편

- (면허요건의 완화) 시설·장비와 자본금, 기술자 보유요건등을 완화함. 기술자 요건

을 완화하는 대신 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공사수주량에 따라 인력고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면허의 단계적 폐지) 현행 일반, 특수, 전문면허 가운데 특수건설업은 존립근거가 희박할 뿐더러 입찰제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장비 및 시설의 보편화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특수건설업을 폐지함.
- (건설업 시공자격의 제도 일원화) 분산되어 있는 건설관련법(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 등)을 건설업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업의 인허가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의 건설업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함.
- (외국업체의 시공자격 부여방안 마련) 외국건설기술자의 특별인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급한도액 산정시 제3국공사는 발주처 및 해당 재외공관의 확인후에 인정여부를 결정함.

□ 입찰 및 계약제도

○ 사전자격심사제도의 정착

- 토건 도급한도액은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하여 시공능력 지표로서 정확도를 제고
- 장기적으로는 도급한도액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발주관서의 특성을 살린 PQ 제도를 확대하고 중소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처별 등급심사제를 시행함.

○ 최저가낙찰제도의 정착과 종합낙찰제의 여건조성

-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는 낙찰제도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가격과 기술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종합낙찰제를 도입함.

○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계약 활성화

- 신기술지정이나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VE(Value Engineering), 대안입찰, 기술공모형 입찰방식 등을 도입함.

○ 건설보증제도 개선

- 건설공사의 완성자체를 보증하는 공사완성보증, 이른바 「슈어티 본드」(surety bond)의 도입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등 건설금융기관의 건설업체 신용평가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여야 함.

○ 입찰담합 및 입찰부정행위의 근절

- 담합은 특히 개방이후 일본에서와 같이 국제간 분쟁의 소지도 있어 향후 담합

은 불공정거래로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함.

□ 하도급 및 도급제도의 개선

○ 계열화의 촉진

- 개방시 외국업체가 국내의 우수한 전문업체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협력적 계열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000년경에는 업체의 외주 비율이 현재 30%에서 60%까지 증가하여 하도급체계의 효율성 여부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

* 설문결과 외국업체의 하도급공사를 수행할 의향이 있다는 전문업체 응답 93.4%

○ 불공정·불법하도급의 근절

-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공권을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공정거래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일괄하도급 및 무면허하도급도 처벌을 강화함.

○ 재하도급규제의 현실화

- 기술·공법의 다양화와 공사의 대형화로 다단계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나 경직적인 재하도급 규정때문에 불법하도급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일괄하도급이나 불필요한 중층재하도급은 종전대로 규제하되 발주자동의하에 2차이하의 재하도급도 허용하는 등 하도급 규정의 현실화가 필요함.

□ 해외건설은 앞으로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국내건설시장규모의 50~60배에 달하는 2조 5천억불 규모의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보다는 동남아의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등의 북방권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여건을 살펴보면 자금이 부족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공사 금융 조달 요청 공사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민간차원의 투자를 동반한 개발형 해외건설 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경제협력과 공사 발주의 상호관련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일례로 일본의 경우 동남아에 대한 OECF 자금 집중지원을 통하여 동남아 건설시장을 석권하였다.

-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까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하여 입찰시 차별, 자국산품 사용 강요, 자국인력 고용 의무화, 일정비율의 자국업체 하청유도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 해외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외건설연불금융의 지원을 확대하여 시공 자금용 요청공사 발주에 대처,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개발해야 한다.
- 현행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장비의 국내반출입규제의 경우 3년이상 해외 건설 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장비는 국내외산을 불문하고 국내반출입을 자유화해야 한다.
- EDCF 자금을 건설부문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EDCF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시 건설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키고 EDCF 지원사업에 의하여 창출된 공사(발전소, 도로, 교량 등 기간산업)에 해외건설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EDCF 자금을 대폭 확충하도록 한다.
- 해외근로자에 대해서 국외근로소득 공제 한도(현재 월 50만원)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며 해외근로자를 위한 주택분양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주택 분양시 우선권 부여를 기능인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관리직, 기술직까지 확대하고 민영주택 특별분양의 수혜대상조건을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하고 귀국후 2년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특별분양 수혜지역의 확대를 요망한다.
- 건설산업의 구조를 soft형 기술(F/S, Engineering, CM, 유지보수)위주로 전환하고 축적된 기술 및 진출국의 건설관련 법규, 세제, 노임 등 각종 정보 및 해외공사 시공 경험(기술), 금융기법 등의 경험을 업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외공사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
- PLO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PLO지역의 경제 개발계획 및 공사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여 PLO 지역의 복구사업에 참여기반을 구축하고 PLO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개발자금지원을 통해 아국업체 진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해외현장에 투입할 개도국의 인력을 국내 각종현장에서 교육·훈련하여 해외현장 훈련으로 인한 원가상승, 시간낭비, 저생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국내건설산업내에 토목, 건축 관련 기술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금융, 법률, 정보시스템, 전기, 화학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굴, 평가, 의사결정, 사업추진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인재를 확보 육성해야 한다.

몰래버린 쓰레기가 공해되어 내게온다